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

### 검 토 보 고

#### 1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과정동 447-13 우림그린아파트 310호 정태환등 7,338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로서,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, 완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사하구의 종합계획 수립·실천, 재정지원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골자

##### 가. 조례안의 목적 및 목표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- 1) 구청장 및 교육장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.
- 2) 직영급식의 확대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.
- 3)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### 나.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
- 1) 구청장 및 교육장은 이 조례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을 수립·실천하여야 하고 실천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, 예산 계획 및 재원마련의 원칙과 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함.
- 2)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.

#####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- 1) 지원대상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와 특수학교,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한다.

- 2)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를 직접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·감독한다.
- 3)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.

**라.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**

- 1)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구청장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,
- 2) 구청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제출·부의토록 규정

**마. 학교급식지원 위원회 설치·운영 및 기능을 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**

- 1)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, 지원규모와 내역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함.
- 2) 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및 기능을 규정

**바.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, 제11조)**

지원대상자의 정산보고 및 구청장과 위원회의 지도·감독 의무를 부과함.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및 학교급식법」, 「동법 시행령」

나. 기 타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조 9의 규정에 의한 사하구 의견

**4. 검토의견**

◎ 본 조례안은 제안사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의 국민 7,338명의 서명을 받아('05. 4. 14 - 7. 13) '05. 7. 14 사하구청에 조례제정을 청구하였으며,

◎ '05. 7. 15 조례제정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일반인의 열람, 이의신청 및 유·무효 서명확인을 거쳐('05. 7. 15 - 7. 21)유효서명자수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연서 주민수(6,900명)을 충족하여, 사하구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총 9개조로되어 있는데,

◎ 조례안의 제1조(목적)에서 규정해 좋은것과 같이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와 영유아교육기관의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,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 농수축산물을 소비촉진함으로써 생산과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인데

◎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뜻이라 하겠으나,

◎ 그 내용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보면 타 법령과의 중복 또는 상충여부와 우리구 재정여건의 2부분으로 크게 분류 검토해 볼 수 있는데,

**첫째 :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**

1. 조례안 제1조(목적), 제2조(목표), 제3조(정의), 제6조(지원방법), 제7조(지원신청)에서 “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”을 사용토록 규정내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,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(GATT) 제3조 제1항,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바 있으며, 세계무역기구(WTO)규정에 의하면 일정 허용범위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점등을 볼때 국제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으며,

2. 조례안 제2조(목표), 제4조(자치단체의 의무), 제6조(지원방법), 제8조(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)등에 대해서도

○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 하고 있는데

- 지방자치법에서는 「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」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,(제112조)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「교육·학예」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“시·도교육감(제20조)”을 두고 “교육비특별회계(제40조)”를 따로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“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”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 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구청이 기초자치단체 산하로 흡수된 후에야 가능하리라 생각되며,

**들쭉 :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**

1. 조례안 제2조 제5항,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“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” 및 “구청장을 학교 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였는데,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면 “학교급식 관련비용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부담원칙”을 규정하고 있으며, 동시행령에 의거 일반 자치단체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화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.
2. 문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때 본 조례안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래 현황을 참작해 볼때 우리구 재정으로는 불가하다고 사료됨. (아래참조)

◎ 우리구 관내 학교현황 ▷ 9월말 현재

(단위:개소,명)

합계		보육시설		유치원		초등학교		중학교		고등학교	
학교수	학생수	학교수	학생수	학교수	학생수	학교수	학생수	학교수	학생수	학교수	학생수
285	67,947	187	6,652	44	3,772	26	28,930	15	15,182	13	13,411

◎ 1일 학생 1인당 500원 지원할 경우 : 3천4백만원 소요

▷ 연간 200일 지원할 경우 : 68억 소요(집행부제공 자료임.)

### 3. 결론적으로

관내 주민 7,388명이 청구한 자녀들을 위한 승고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내용이 타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뿐 아니라 여타 조항도 위배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자동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본위원회에서 수정처리하기에는 문제가 많으며,

재정적 부분도 우리구가 부담하기에는 시기상조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참고하여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우리구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조례안을 제정 재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.